

「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)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8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8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첨단산업국장 김 팔 근

#### 나. 제안이유

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(전력기금)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, 2023년 10월 산동읍 주민협의체에서 5공단 부근 마을회 부지 내 마을물류창고 건립을 요청,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비하여 물류창고 및 캠핑장 사업을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를 실현하고,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용을 통해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.

#### 다. 주요내용

##### 【취득재산】

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

- 위 치 : 산동읍 도중리 산116-1번지
- 대 상 : 건물 660㎡(2개동), 캠핑장 3,300㎡, 태양광시설
- 사업기간 : 2024 ~ 2025년
- 총사업비 : 3,477백만원
  - ※ 사업비 산출내역 : 공사비(토목기초, 건축공사) 3,200백만원  
설계 및 감리비 277백만원
- 주요시설 : 마을물류창고, 캠핑장, 태양광 건립공사 1식

구 분	면적(㎡)	용 도	비 고
1동(지상1층)	660	마을물류창고	지붕 및 잔여부지 활용하여 태양광 사업예정
2동(지상1층)	660	마을물류창고	
잔여부지(토지)	3,300	캠핑장	

- 추진현황 및 계획
  -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: '23. 7~10월
  - 사업계획 제출(구미시→전력기금사업단) : '23. 10. 31.
  - 사업승인확정(전력기금사업단) : '23. 12월
- 향후추진계획
  - 공유재산심의회 : '24. 9월
  - 공유재산 관리계획 : '24. 10월
  - 측량 및 건축기획용역 : '25. 2월
  - 실시설계용역 시행 : '25. 4월
  - 물류창고 조성공사 착공 : '25. 6월

## 라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#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<sup>2</sup>, 백만원)

구 분		건 수	수 량	금 액
취득	계	1	1,320	3,477
	1.매입			
	2.교환 으로 취득			
	3.기타 취득	1	1,320	3,477

## 취득재산 목록

회계명 :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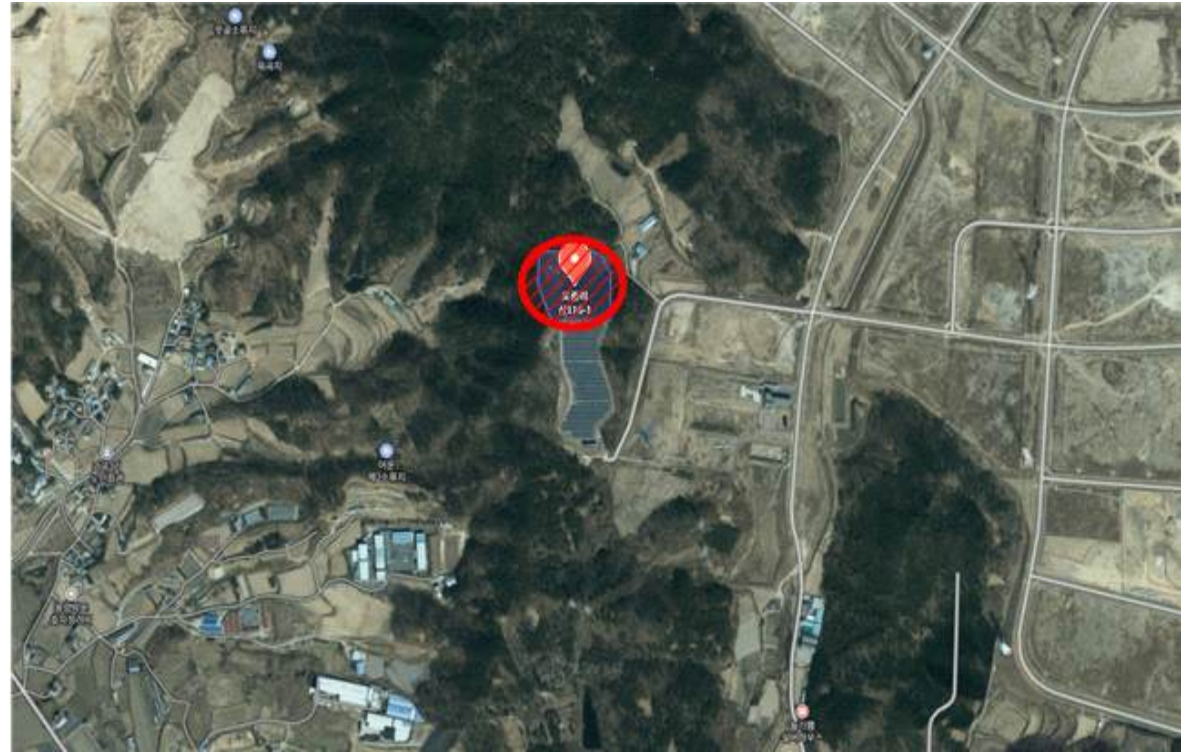
(단위 : m<sup>2</sup>, 백만원)

구분	재 산 의 표 시			추정 가액	취득 시기	사 유	소유자	비고
	구분	소 재 지	수량					
소계			1,320	3,477				
취득	건물	산동읍 도중리 산116-1	1,320	3,477	2025년	마을물류창고 조성	구미시	신축

# 위 치 도

## □ 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

○ 소재지 : 산동읍 도중리 산116-1번지



#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#### 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,

#### ○ 검토 결과,

- ‘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’은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(전력기금)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, 산동읍 주민협의체의 요청으로 마을회 부지 내에 마을물류창고 건립 및 태양광 등 사업을 통해 주민소득증대를 실현코자 한 것으로, 주민들의 자율적 결정 및 요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집행기관에서는 건물신축 공사를 하자없이 철저히 수행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### 5. 토 론 요 지

-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주민 간 갈등이 있는 경우 지역구 의원과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함.

### 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 략

### 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